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503458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고순우, 이교범

피고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석, 조성민

변론 종결2019. 4. 18.

판결 선고2019. 6. 13.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14,041,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 중 85,170,000분의 61,797,17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7. 10.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0. 10. 접수 제766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는 원고에게 256,809,085원 및 그 중 158,761,726원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97,686,614원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012. 10. 24.	144,000,000원(2013. 10. 23.)이후 보증원금은 108,8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7. 10. 20.로 변경됨(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D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
2016. 7. 27.	100,000,000원(2017. 7. 26.)이후 보증기한이 2018. 7. 26.로 변경됨(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E 주식회사	상거래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 근보증
2017. 2. 20.	48,800,000원(2018. 2. 19., 이하 '이 사건 제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C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대위변제금액 및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의 손해금율(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 이후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의 연대보증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C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7. 10. 17.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77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 C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15. D은행에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109,524,33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3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49,237,38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7. 12. 22.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97,961,42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C로부터 274,806원을 회수하였다.

3)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로 인한 위약금은 360,670원,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로 인한 확정손해금은 75원이다.

라. C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및 변제계획

C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77호 사건에서 2018. 6. 5.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회생담보권(구상채권)

가. 시인한 총 채권액 내역

조사기간에 시인된 회생담보권(구상채권)과 그 이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변경1	원고	108,800,000	166,777	-	108,966,777
-------	----	-------------	---------	---	-------------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 연도(2018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 연도(2018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회생담보권(구상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 변경1	원고	108,966,777	108,800,000	166,777	5,075,165	114,041,942
--------	----	-------------	-------------	---------	-----------	-------------

4. 회생채권(구상채권)

가. 시인한 총 채권액 내역

조사기간에 시인된 회생채권(구상채권)과 그 이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완 채권4	원고	151,082,090	218,694	-	151,082,090	218,694	-	151,300,784
--------	----	-------------	---------	---	-------------	---------	---	-------------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는 출자전환하고 3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40%는 제4차 연도(2021년)부터 제7차 연도(2024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0%는 제8차 연도(2025년)부터 제10차 연도(2027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안 제9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2) 개시 후 이자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 회사가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구상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완 채권4	원고	151,300,784	98,203,359	142,151	-	98,345,510	52,878,732	76,543	-	52,955,274
--------	----	-------------	------------	---------	---	------------	------------	--------	---	------------

한편, 피고 A는 2017. 10. 10.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A 소유의 85,170,000분의 61,797,17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766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A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A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현재 256,809,085원(=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 잔액 109,524,339원 +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위약금 360,670원 +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 잔액 97,686,614원 +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확정손해금 75원 + 제3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 잔액 49,237,387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256,809,0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 주채무자인 C에 대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가 감경되었고 변제기가 연장되었으며(원고가 D은행에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제1순위 담보권이 있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채무액이 합계 114,041,942원으로 감경되었고, 원금과 개시 전·후 이자 모두 2018. 12. 31.로 변제기가 변경되었으며, 원고가 E 주식회사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대위변제하여 취득한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합계 151,300,784원에서 권리 변경 후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52,955,274원으로 감경되었고, 변제기가 2021년 이후로 변경되었다), 그 효력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의하여 피고 A에게 미치므로, 피고 A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현재 채무액이 감경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액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A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77호 사건의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관리인에 의하여 시인된 원고의 회생담보권 108,800,000원과 이에 대한 개시 전 이자 166,777원, 개시 후 이자 5,075,165원 합계 114,041,942원은 2018년에 변제하고, 원고의 회생채권 151,300,784원(원금 151,082,090원과 개시 전 이자 218,694원) 중 98,345,510원(원금 98,203,359원과 개시 전 이자 142,151원)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2,955,274원(원금 52,878,732원과 개시 전 이자 76,543원) 중 40%는 제4차 연도(2021년)부터 제7차 연도(2024년)까지, 60%는 제8차 연도(2025년)부터 제10차 연도(2027년)까지 매년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C는 회생담보권 114,041,942원 및 회생채권 52,955,274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한편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C의 채무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 A의 채무도 감경 또는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A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주채무자 C와 같은 166,997,216원(= 회생담보권 114,041,942원 + 회생채권 52,955,274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이행기 도래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위 166,997,216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취지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그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고,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위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참조), 피고 A가 변제하여야 할 166,997,216원 중 회생채권 52,955,274원의 변제기는 2021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회생채권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위 회생채권의 지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회생채권 52,955,274원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2018. 12. 31. 변제기가 도래한 회생담보권 114,041,942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 1.부터 피고 A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와 피고 B이 2017. 10. 10.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C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지 7일 후인 2017. 10. 17. C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호에 의해 사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7. 12. 15. D은행에 109,524,339원, 중소기업은행에 49,237,387원을, 2017. 12. 22. E 주식회사에 97,961,420원을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사후구상금 채권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한편, 피고 B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회생담보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회생채권 부분은 채권액이 52,955,274원으로 감축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회생담보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회생담보권이 114,041,942원으로 감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회생담보권은 아산시 F 창고용지 7,039㎡, 아산시 F 1동 창고시설 397.5㎡, 2동 창고시설 495㎡, 3동 창고시설 495㎡, 4동 창고시설 495㎡ 등에 관한 채권최고액 676,000,000원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회생담보권은 그 채무 전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회생채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C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회생채권이 52,955,274원으로 감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회생채권 52,955,274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참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에는 근저당권자 G조합, 채권최고액 61,10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에 채권최고액 61,1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47,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89,37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지분의 가액 137,407,833원(= 189,378,000원 × 61,797,174/85,170,000, 원 미만 버림)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고 B에게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A의 사해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선의라고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이 이 사건 지분의 가액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을 한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이 137,407,83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종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아산시 189㎡는 소액부징수 대상이므로 적극재산 산정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G조합에 대한 채무 47,000,000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 등 합계 347,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경우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체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도영

판사이효은

판사정지원

별지